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5월 26일
발 의 자: 김태수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원중, 문성호,
이민석, 이종환, 최진혁,
홍국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‘26.2.27.) 사항을 고려하여, 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위원 위촉위원 수 기준을 현행 “이상”에서 “내외”로 변경함(안 제30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)
- 나.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(안 제30조의2제2항제9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“이상”을 각각 “내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	제30조의2(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제1호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건축법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	2. ----- ----- ----- ----- 내외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	3. ----- ----- ----- ----- 내외
4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상	4. ----- ----- ----- 내외
5. 「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	5. -----

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통영
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
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
하는 자 5명 이상

6. 「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
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
한 조례」에 따른 재해영향평
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
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
자 4명 이상

7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시·도교육환경
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
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4명 이상

<신 설>

③ ~ ⑥ (생 략)

----- 내외

6. -----

----- 내외

7. -----

----- 내외

8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
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
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
이상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, 분야별 위촉 위원 수 기준을 정비 (“이상” → “내외”)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, 운영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수당 지출 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.

2. 작성자

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

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

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

주 무 관 이 설 화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